

설계·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설계·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설계·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업무요령은 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2조, 제76조, 제117조</u> 규정에 의한 <u>설계·건설사업관리·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(이하 “보험 또는 공제”라 한다)</u>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업무요령은 <u>건설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</u>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<u>설계 등 용역, 건설사업관리, 감리용역</u>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발주청”이라 함은 <u>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</u>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. 2. “설계”라 함은 <u>법 제2조제2</u> 	<p><u>설계·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령</u>」 제50조----- ----- ----- <u>설계·건설사업관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「<u>건설기술진흥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----- ----- <u>실시설계용역, 건설사업관리용역</u> -- -----.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</u> -----. 2. “<u>실시설계</u>”라 함은 <u>법 제2조</u>

현 행	개 정 안
<p><u>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규정한 설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.</u></p> <p>3. “건설사업관리”라 함은 <u>법 제2조제14호</u>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.</p> <p>4. “감리”라 함은 <u>법 제2조제9호의 검측감리, 제10호의 시공감리 및 제11호의 책임감리를 말한다.</u></p> <p>5. “제3자”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업자(하수급인 포함)와 용역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기본설계 및 실시설계</u> :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</p> <p>2. 건설사업관리 :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</p> <p>3. <u>검측감리,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</u> : <u>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</u></p> <p>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(이</p>	<p><u>제2호 중 ‘설계’에 관한 업무 중 영 제73조에 의한 설계를 말한다.</u></p> <p>3. ----- <u>법 제2조제4호</u>----- ----- <u>(삭제)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1. <u>실시설계</u> :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하 “손해보험회사”라 한다)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, <u>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</u>(이하 “공제조합 등”이라 한다)를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<u>제3조제2호 내지 제4호</u>의 용역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.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3. 건설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4. 검측감리 보험 또는 공제 5. 시공감리 보험 또는 공제 6. 책임감리 보험 또는 공제 	<p>제5조(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3조제2호 부터 제3호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삭 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삭 제) (삭 제) (삭 제)</p>
<p>제6조(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)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(이하 “순계약금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③ 발주청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의 가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보험 또는 공제약관)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·신고한 <u>설계·감리 등</u> 용역손해 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 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기타사항)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</p>	<p><u>1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: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</u></p> <p><u>2.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: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(삭제)</p> <p>제10조(보험 또는 공제약관) ----- ----- ----- <u>설계·건설사업관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5조(기타사항)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용역업자 및 손해보험회사(또는 공제조합 등)와 협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<u>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</u>에 분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<u>2015년 5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 설)</u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설분쟁 조정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 <p>제16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17년 5월 22일</u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제1조 (적용례) 이 업무요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입찰 공고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.</u></p> <p><u>제2조 (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경과조치) 법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요령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“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”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“건설감리협회”를</u></p>

현행	개정안
	<u>개정규정에 따른 “공제조합”으로 본다.</u>